

2017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I. 학과별 모집인원
- II. 전형일정
- III. 지원 및 선발방법
- IV. 지원 자격
- V. 제출서류
- VI. 지원자 유의사항
- V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부록

- 1. [별지 1호 서식] 2017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지원서
- 2. [별지 2호 서식] 제3국 수학 사유서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I. 학과별 모집인원

대학	학과	모집인원(정원외)	
		영주교포, 해외근무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간호대학	간호학과	8명 이내	제한 없음
	노인복지보건학과	4명 이내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5명 이내	
	물리치료학과	6명 이내	
	방사선학과	8명 이내	
	치기공학과	5명 이내	
	병원경영학과	7명 이내	
	언어청각치료학과	5명 이내	
응용과학대학	환경공학과	3명 이내	
	산업보건학과	3명 이내	
	환경행정학과	3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3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3명 이내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7명 이내	
	유통경영학과	4명 이내	
	경영정보학과	4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4명 이내	
	사회복지상담학과	4명 이내	
계		18명 이내	-

※ 영주교포의 자녀, 공무원·상사직원·국제기구 근무자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는 '입학정원 2% 이내'의 모집 대상자에 해당되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함

II.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 및 서류 접수	2016.07.01(금) 09:00 ~ 07.08(금) 17: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면접 대상자 발표	2016.07.12(화) 14:00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면접고사	2016.07.15(금)	
합격자 발표	2016.07.20(수) 14:00	
예치금 등록	2016.12.19(월) ~ 12.21(수) 은행마감시간	부산은행/농협 전 지점
미등록 총원 및 등록	▶ 총원기간 : 2016.12.22(목) ~ 12.28(수)	
	▶ 등록기간 : 2016.12.22(목) ~ 12.29(금)	
본 등록	2017.02.03(금) ~ 02.06(월) 은행마감시간	부산은행/농협 전 지점

Ⅲ. 지원 및 선발방법

1. 지원 및 선발방법

가. 지원

- 1개 학과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이 전형의 지원횟수가 수시모집 원서접수 제한횟수 6회에 포함되므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 합격자는 모집시기가 같은 타 대학(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이중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대학 및 타 대학(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형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합격자의 입학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6회 이후의 지원사항은 취소됩니다.

나. 면접대상자 선발

- 서류 미비자 및 지원 자격 결격 사유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이 면접대상자가 됩니다.

다. 합격자 선발

- 합격자는 학과별로 총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하고 예비 후보자는 학과별 합격자 최하 순위의 차 순위부터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기타사항

- 우리 대학은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지원자 및 학교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호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근무국, 근무기간, 전화번호)
 - 학교 정보 : 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재학기간, 학교주소
 - 기타 정보 : 재외국민전형 제출 서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등록금 납부(환불), 전형료 납부(환불) 및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입학자의 경우 학사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합니다.

2. 전형요소

모집구분	연접	비고
전 학과	100%	연접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IV. 지원 자격

1. 자격 기준에 따른 요건

-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12년 이상의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지원 자격	자격 요건	비고
영주교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내국인 입학 총정원의 2% 이내 &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해외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상사직원·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부모 중 1명과 학생의 체류기간 적용)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부모 중 1명과 학생의 체류기간 적용)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현지법인·해외 선교활동·해외 파견 교직원 등의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고교 3년 이상(부모 중 1명과 학생의 체류기간 적용)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입학정원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2. 자격요건 유의사항

가.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말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 기간의 산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봅니다.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이란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교 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교 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과 같이 해석합니다.
- 부모가 근무한 국가에 소재된 학교의 재학만 인정하며, 부모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 국가가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에 대한 정의	
■ 공통사항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함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나. 체류기간

전형유형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 : 년)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의 자녀	2	2	2	-	2	2	2	2	연속
해외근무자의 자녀	2	2	2	2	2	2	2	2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2	2	2	2	2	2	2	2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2	2	2	2	2	2	2	2	

※ 상기 기간을 토대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함

다. 영주교포 자녀에 대한 추가 유의사항

- 부모 및 학생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어야 하고, 지원 당시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은 이민으로 인해 말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기간 중의 근무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마. 공무원의 범위 및 해외근무자의 형식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해외근무자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육·연수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을 말하고,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합니다. ‘국제기구’란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비정부간 또는 기타 국가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합니다.

사.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과정 이수자)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

-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 12년 이상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을 인정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해 지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 국가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안내(2021학년도부터 적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만 해당 :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체류기간 변경

구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	고교 1년 포함 중·고등학교 3년 이상
체류 기간	2년	⇒	- 보호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V. 제출서류

1. 유형별 제출서류

가. 영주교포의 자녀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 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⑥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⑦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나. 해외근무자의 자녀(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자녀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④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 학생)
- ⑦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 ⑧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⑨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
- ⑩ 해외지점(법인)설치 관계서류(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⑪ 사업자등록증(상사직원)

다.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자영업·현지법인·해외 선교활동·해외 파견 교직원 등)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④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 학생)
- ⑦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 ⑧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⑨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해외 선교활동)

라. 전 교육과정 이수자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마. 북한이탈주민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2.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7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학기간(입학 ~ 졸업)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Seal)이 있어야 합니다.

나. 초·중·고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초·중·고교의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고, 성적우수 등으로 월반, 조기졸업을 한 경우 이에 관한 해당 학교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는 학년/학기 단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영주권 사본

- 부모 및 학생 모두 해당,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제3국 수학인정서

- 학생이 부모 체류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부모 체류 국가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마.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급의 부·모·학생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바. 주민등록등본

- 필요할 경우 본교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학원서접수 개시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사.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한 해외지사 및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가한 현지법인·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법인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해당 국가 근무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재직증명서

- 해외파견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기관의 본사(인사권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자격 취득기간 중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휴직 또는 연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그 이전 1년간의 급여기록사실에 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최종학교 졸업학력인정서

- 통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카. 아포스티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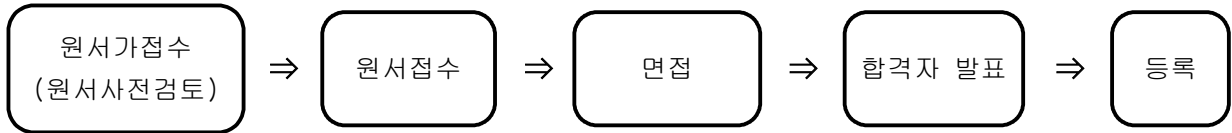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서류를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을 받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은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임. 현재 미국·프랑스·독일·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9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 바랍니다(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경유증명 해당국).

VI. 지원자 유의사항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학지원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는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가 2017년 2월 이전에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은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대리시험, 시험 중 무선통신기기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또는 입시 부정 관련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은 모두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가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합니다.
- 이 전형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V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지원절차



※ 원서 가접수 : 지원자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

2. 접수에 관한 사항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07.01(금) 09:00 ~ 07.08(금) 17: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전형료 : 60,000원(우편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으로 바꾸어 원서에 동봉하여 납부)

나. 전형료 환불

- 접수된 원서는 취소되지 않으며 전형료 반환도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형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정의 사후 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관계로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료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업무에 사용되며,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형 방법

가. 면접(총 1,000점 만점)

- 면접 문항 1(300점)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3분)
- 면접 문항 2(300점) :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2분)
- 면접 문항 3(400점) : 특정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표현(5분)

나. 면접 진행 방법

- 면접고사 시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 최소한 5분간 면접 문항지를 열람하고 답변을 준비하게 합니다.
- 총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07.20(수) 14:00
- 장소 :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cup.ac.kr) 공지

나. 합격자 확인

- 반드시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합격자 명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에 따른 제반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5. 등록(포기)

가. 등록기간

- 예치금 등록 : 2016.12.19(월) ~ 12.21(수) 은행 마감시간(16:00)까지
- 본 등록 : 2017.02.03(금) ~ 02.06(월) 은행마감시간(16:00)까지

나. 등록방법

- 부산은행·농협 전국 각 지점에서 계좌송금(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가능)

다. 예치금 환불(등록포기)

- 환불기간 : 2016.12.22(목) ~ 12.28(수) 16:00까지
- 환불절차 : 유선문의 / 입학처 입학관리부 051)510-0701~6

수험표

부산가톨릭대학교
2017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입학전형일정>

수험번호		
지원 사항	지원학과	
	성명	

- 면접 : 2016.07.15(금)
※ 면접시간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발표 : 2016.07.20(수) 14:00
※ 홈페이지 공지

※ 면접고사 시 수험표 및 신분증 필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기타사항

- 우리 대학은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지원자 및 학교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호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근무국, 근무기간, 전화번호)
 - 학교 정보 : 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재학기간, 학교주소
 - 기타 정보 : 재외국민전형 제출 서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등록금 납부(환불), 전형료 납부(환불) 및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입학자의 경우 학사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합니다.

